

## 영수증서(납세자용)

(1면)

납부번호 (전자납부번호:0126-2202-4-14-73155211)					수입징수관서			
분류기호	납부연월	납부구분	세 목	발행번호	세무서명	서코드	계좌번호	
0126	22 02	4	14	73155211	성동 세무서	206	011905	
상호 (성명)	리얼컴 (최진만)	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	672-10-00779	회계연도	2022	
사업장 (주소)	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, 판매동 7층 A-034호 (구의동, 테크노마트)				일반회계	기획재정부소관	조세	

연도/기분	2022년 02월	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. (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) 납부기한 2022년 03월 10일 가상계좌 (23: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)      유효기간 2022.03.10 (예약이체불가) 국세계좌 0126-2202-4-14-73155211      기업 071-8978-9393-84-1 KEB하나 696-1763-7817-93-7      신한 562-1528-5264-94-1 국민 003-3928-5264-97-3      우리 916-7636-4918-89-4
세목명	납부금액	
근로소득세(갑)	35,680	
교육/방위세	0	
농어촌특별세	0	
가산금	0	
<b>계</b>	<b>35,680</b>	

년 월 일

은행  
우체국 등

지점

수납인

※ 이 납부서는 FAX로 전송하거나 복사하시면 자동화기기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.  
 ※ 신고 집중기간에는 가상계좌 조회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납부서 출력일 : 2022년 02월 23일

## 납부서(수납기관용)

(2면)

납부번호 (전자납부번호:0126-2202-4-14-73155211)					수입징수관서			
분류기호	납부연월	납부구분	세 목	발행번호	세무서명	서코드	계좌번호	
0126	22 02	4	14	73155211	성동 세무서	206	011905	
상호 (성명)	리얼컴 (최진만)	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	672-10-00779	회계연도	2022	
사업장 (주소)	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, 판매동 7층 A-034호 (구의동, 테크노마트)				일반회계	기획재정부소관	조세	

연도/기분	2022년 02월	왼쪽의 금액을 한국은행 국고(수납)대리점인 은행 또는 우체국 등에 납부합니다. (인터넷 등에 의한 전자납부 가능) 납부기한 2022년 03월 10일 가상계좌 (23:00 까지 납부 가능합니다)      유효기간 2022.03.10 (예약이체불가) 국세계좌 0126-2202-4-14-73155211      기업 071-8978-9393-84-1 KEB하나 696-1763-7817-93-7      신한 562-1528-5264-94-1 국민 003-3928-5264-97-3      우리 916-7636-4918-89-4
세목명	납부금액	
근로소득세(갑)	35,680	
교육/방위세	0	
농어촌특별세	0	
가산금	0	
<b>계</b>	<b>35,680</b>	

년 월 일

은행  
우체국 등

지점

수납인

납부서 출력일 : 2022년 02월 23일

◆ 납부 방법 안내

- ◎ 인터넷뱅킹: [금융기관 홈페이지] 접속 ⇒ [인터넷뱅킹, 온라인서비스, 국세납부 등] 선택 (납부 가능 시간은 각 금융기관 홈페이지 참조)
- ◎ ARS 납부: [거래은행의 ARS전화] 접속 ⇒ [국세납부 등] 선택 ⇒ 안내에 따라 납부
- ◎ ATM 납부: [거래은행의 ATM기] 이용 ⇒ [국세납부 등] 선택 ⇒ [납부번호입력] ⇒ [납부]
- ◎ 홈택스(홈택스 앱 포함)(hometax.go.kr)나 인터넷지로(giro.or.kr)를 이용하면 365일 국세납부 가능 (납부가능시간 ⇒ 07:00~23:30)
- ※ 국세계좌 납부: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은행(인터넷은행, 증권사, 산림조합중앙회 제외)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합니다
  - 인터넷·모바일 뱅킹 → 계좌이체 선택 → 입금은행 메뉴에서 "국세" 선택 → 국세계좌번호 및 금액 입력 → 납부 실행
- ※ 신용카드 납부는 홈택스, 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or.kr), 은행CD/ATM기, 세무서에서 납부 가능하며, 납부 후 승인 취소나 할부 개월 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.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. (신용카드 0.8%, 체크카드 0.5%)
- ※ 국고금 취급절차에 따라 납부 후에는 수납을 취소할 수 없으며, 초과납부한 국세는 환급금 취급 절차에 따라 환급됩니다.
- ※ 이 납부서로 경남, 광주, 국민, 기업, 신한, 우리은행 또는 농협, 수협 등의 공과금수납기에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